

부산지방법원 2024. 7. 11 선고 2024가단32362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7. 11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.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10. 26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.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와 2023. 10. 26. 접수 제 40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조정현

별지